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 도 자 료</h1> <p>11월 8일(월) 조간 (11.7.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21.11.5. / (총 7매)	담당부서	건강증진과
과 장	이 윤 신	전 화	044-202-2820
담 당 자	윤 석 범		044-202-2822

##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- 담배 정의 확대 및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 구축 제안

\* 담배의 정의를 ‘연초의 잎’을 원료로 한 것에서 ‘연초의 줄기·뿌리 및 합성니코틴’을 원료로 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 제안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11월 8일(월)부터 13일(토)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(WHO, World Health Organization)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,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)\* 제9차 당사국 총회(이하 ‘당사국 총회’)에 참석한다고 밝혔다.

\*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: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(2003년 채택, 2005년 발효), 현재 182개국 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

□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‘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’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‘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(플랫폼) 구축’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.

○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‘연초의 잎’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

- ‘연초의 줄기·뿌리 등’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.

-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,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,
  -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(플랫폼)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.
  
-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,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한다.
  -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,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.
  
- 11월 8일(월) 오후 6시(한국시간)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‘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, ‘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·제10조(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), ‘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.
  
- 우리나라는 ‘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, ‘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및 ‘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.
  - 또한 ‘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, ‘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·여성의 흡연 유인, ‘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.

- 이번 당사국 총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된다.
  - 전체회의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고, 잠정보고서 채택 및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을 논의한다.
  - 분과회의는 분과A와 분과B로 나누어지며, 분과A에서는 담배규제 관련 이슈를, 분과B에서는 예산 및 조직운영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.
    -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분과A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  
-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“이번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 - 또한 “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후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”라면서,
  - “앞으로 WHO 등 국제사회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정책인 ‘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, ‘담배광고·판촉·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  
 2. 제9차 당사국 총회 잠정 의제 목록  
 3. WHO 제8차 세계 흡연실태보고서 주요결과

**붙임 1**

**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**

- WHO 담배규제기본협약(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, FCTC)
  -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을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 구축과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('03년 채택, '05년 발효)
    - 2021년 현재 182개 당사국이 참여 중이며,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
    -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와 개정이 용이하도록 공통의 규범만을 규정하고, 국가별로 상이한 분야의 경우 여러 개의 의정서(Protocol)\* 제·개정 가능
    - \* '12년 제5차 당사국총회(서울 개최)에서 최초의 의정서인 「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」(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) 채택(제15조 관련)

- WHO FCTC 당사국 총회(Conference of the Parties, COP)
  - WHO FCTC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,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협약 실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 및 채택
  - 그 간의 회의 경과

구분	기간	장소	참여국	주요사항
1차	'06.2.6~2.17	스위스 제네바	113개	• 협약 사무국 운영 및 예산운용 규칙 채택 • 이행보고서 및 의정서 개발 논의
2차	'07.6.30~7.6	태국 방콕	146개	•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
3차	'08.11.17~11.22	남아공 더반	129개	• 제5.3조, 제11조, 제13조 가이드라인 채택
4차	'10.11.15~11.20	우루과이 몬타델에스테	134개	• 제9·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 • 제12조, 제14조 가이드라인 채택
5차	'12.11.12~11.17	대한민국 서울	136개	•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• 서울선언문 채택 • 제9·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
6차	'14.10.13~10.18	러시아 모스크바	137개	• 제6조 가이드라인 및 제7·18조 정책권고안 채택 • 모스크바선언문 채택 •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
7차	'16.11.12~11.17	인도 델리	130개	• FCTC 영향평가 결과 발표 • 성(性) 인지적 담배규제 개발 중요성에 관한 결정문 채택 *우리나라 상징 • 델리선언문 채택
8차	'18.10.1~10.6	스위스 제네바	148개	• 가열담배 및 관련 기기 장치에 담배규제 정책 적용을 위한 결정문 채택

**붙임 2**

**제9차 당사국 총회 잠정 의제 목록**

전체 회의	의제 1	<p>개 회</p> <p>1.1. 의제 및 업무계획 채택</p> <p>1.2. 참가자 신임장 검토</p> <p>1.3. WHO FCTC 9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특별 절차</p>
	의제 2	당사국 총회 참관인 자격 신청 검토
	의제 3	WHO FCTC 세계이행보고서 발표 및 토론
분과 A	의제 4	<p>협약 이행 및 기술적 사안</p> <p>4.1. WHO FCTC 제9조 및 제10조(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: WHO, 협약 사무국, 전문가 보고) 관련 경과</p> <p>4.2. 신규 및 신종 담배</p>
	의제 5	<p>보고, 이행지원 및 국제협력</p> <p>5.1. 검토 메커니즘 지원</p>
분과 B	의제 6	<p>예산 및 조직운영 사안</p> <p>6.1. 지난 회기 최종 결과 및 당해 년도 중간보고</p> <p>    a. 2018-2019년도 업무 및 예산 최종보고</p> <p>    b. 2020-2021년도 업무 및 예산 중간보고</p> <p>6.2. 2022-2023년도 업무 및 예산 계획</p> <p>6.3. 분담금(AC) 납부 현황 및 당사국 체납금 감소 방안</p> <p>6.4. 협약 사무국의 재정확보 전략: 투자 기금 운영</p> <p>6.5. 당사국총회 참관인 자격 승인 검토</p> <p>6.6. 당사국총회와 세계보건총회(WHA) 간 시너지 강화: 제72차, 73차 및 제74차 세계보건총회 주요결과에 관한 WHO 사무총장 보고</p> <p>6.7. 사무국장 임명 : 의장단 보고</p>
전체 회의	의제 7	제10차 당사국총회 일시 및 장소
	의제 8	차기 당사국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
	의제 9	제9차 당사국총회 잠정보고서 채택
	의제 10	폐회

**붙임 3**

**WHO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주요결과**

정책 평가 분야	WHO 평가 기준	국내 이행 현황	
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(M)	완전이행	성인 및 청소년 대상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 보유	✓
	다소이행	성인 및 청소년 대상 대표성 있는 최신 데이터 보유	
	최소이행	성인 또는 청소년 대상 대표성 있는 최신 데이터 보유	
	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	
담배연기로부터 보호(P)	완전이행	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	✓
	다소이행	6~7개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	
	최소이행	3~5개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	
	이행전무	2개 이하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	
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		
금연지원서비스 제공(O)	완전이행	금연상담전화, 금연보조제 및 일부 금연서비스 무상제공	✓
	다소이행	금연보조제 및/또는 일부 금연서비스(최소 한 개 이상 무상제공)	
	최소이행	금연보조제 및/또는 일부 금연서비스	
	이행전무	없음	
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		
담배 위험성 경고(W1)	완전이행	담배갑의 앞뒷면에 평균 최소 50%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든 필요요소를 충족하는 건강경고 부착	✓
	다소이행	담배갑 앞뒷면 평균 30~49%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든 필요 요소를 충족하거나, 최소 50%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부분의 필요 요소만을 충족하는 건강경고 부착	
	최소이행	담배갑 앞뒷면 평균 30~49%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부분의 필요요소를 충족하거나, 최소 50%에 해당하는 면적에 일부 필요 요소만을 충족하는 건강경고 부착	
	이행전무	건강경고가 없거나 담배갑 앞뒷면 평균 30% 미만에 해당하는 건강경고 부착	
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		
담배 위험성 경고(W2)	완전이행	최소 6가지 필요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금연캠페인의 TV 및/또는 라디오 송출	✓
	다소이행	5~6가지 필요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금연캠페인	
	최소이행	1~4가지 필요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금연캠페인	
	이행전무	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최소 3주간 국가금연캠페인 시행된 바 없음	
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		

정책 평가 분야	WHO 평가 기준		국내 이행 현황
담배 광고, 판촉 및 후원 금지(E)	완전 이행	모든 종류의 직접 및 간접 광고 금지	
	다소 이행	국내 TV, 라디오, 인쇄물 및 일부 직접 및/또는 간접 광고 금지	
	최소 이행	국내 TV, 라디오 및 인쇄물 광고 금지	
	이행 전무	광고 금지 전무 또는 국내 TV·라디오·인쇄물에 대한 예외 적용	✓
		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
담배세 인상(R)	완전 이행	소매가격의 75% 이상	
	다소 이행	소매가격의 51~75%	✓
	최소 이행	소매가격의 26~50%	
	이행 전무	소매가격의 25% 이하	
		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	
		2008년 이후 담배 구매력 지수 감소	
		2008년 이후 담배 구매력 지수 증가	
	2008년 이후 담배 구매력 지수 변동 없음	✓	